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 업무시설(오피스) 분양광고

HOBAN
SUMMIT

▣ 분양상담전화(1670-6207) 등을 통해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의 문의 집중 등으로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전홍보관 및 견본주택에는 본 업무시설(오피스)의 견본 유니트 및 모형도가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인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본 업무시설(오피스)은 벤처기업 집적시설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본 업무시설(오피스)은 벤처기업법 제2조 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동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로 동법 제17조의3 2호에 해당하는 집적지역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본 업무시설(오피스)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본 업무시설(오피스)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최초 분양광고일(2023.08.01.) 기준입니다.
- ■ 본 업무시설(오피스)은 주택청약통장 · 주택청약순위와 무관하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거주자 우선 분양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9조2에 따라 분양 호실의 10%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3.07.31. 광고일과 다름)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서울특별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분양합니다.
  ※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서류(주민등록표등 · 초본 등) 검토 후 분양신고일(2023.07.31. 광고일과 다름)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자격 : 본 업무시설(오피스)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 중복청약 유의사항 : 청약은 견본주택에서 현장 접수를 통한 청약만 가능하며, PC, 모바일, 스마트폰앱에서는 청약을 받지 않습니다. 1인당 4실(4건) 청약 가능하며, 4건을 초과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단,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해당 호실(401호, 501호) 청약 시 1인당 1개 호실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을 신청한 자가 다른 호실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 신청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 청약 신청한 업무시설(오피스)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매제한 : 본 업무시설(오피스)이 공급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본 업무시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전매제한 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수분양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조의4에 따라 본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 분양권 전매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관계법령 제 ·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 예비당첨자 선정 : 본 업무시설(오피스)은 호실별 300%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및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체결과 관련한 상세 일정은 당첨자 발표 후 개별 연락을 통해 시간대별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니, 당첨자분의 협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과 – 8644호(2023.07.31)로 분양신고**
- ■ **본 건축물은 2016–용산구–도시환경시행인가 – 1호(2016.03.25)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임**
-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10–1번지 일원(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사업부지 3,610.2000㎡(오피스 : 639.23㎡ 중 일반분양 210.45㎡)
  - 건축물 연면적 : 53,676.47㎡ (오피스 : 9,504.05㎡ 중 일반분양 3,128.91㎡)
  - 건축물 층별 용도 :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오피스), 판매시설
  - 공급규모 : 지하 8층 ~ 지상 39층 1개동 중 업무시설(오피스) 총 51실 중 일반분양 22실(조합 6호실) 및 부대복리시설
  - 주차대수 : 총 299대 (자주식299대) [공동주택(아파트) 167대, 일반업무시설(오피스) 33대,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77대, 판매시설 22대]
- ■ **분양사업자, 분양대행사 및 시공자의 명칭 : 분양사업자 :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조합 / 분양대행사 : (주)씨앤디플래닝 / 시공자 : ㈜호반건설**
- ■ **입주예정일 : 2025년 3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사항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상대보호구역, 정비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 ■ **내진설계 등급**
  - 본 건축물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5의 2. 규정에 의거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음.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0.2038g으로 이는 실시설계 시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유효지반가속도(S)	지반의 종류	중요도계수(IE)	내진설계범주	건물중요도	반응수정계수(R)
0.176	SD	1.2	D	I	6.0

■ 건축물 층별 용도

구분	용도
지하8층~지하2층	발전기실, 기계실, 전기실, 부대시설, 자주식주차장
지하1층~지상3층	판매시설
지상4층~지상8층	일반업무시설(오피스)
지상9층~지상15층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지상16층	피난안전구역
지상17층	공동주택 부대시설
지상18층~지상39층	공동주택(아파트)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단위 : 실, ㎡, 원)

층구분	호실	계약면적				대지지분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50%)				잔금(40%)	비고(거주자 우선분양)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공용	계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0%	1차(12.5%)	2차(12.5%)	3차(12.5%)	4차(12.5%)		
											계약시	2023.12.15	2024.04.15	2024.08.15	2024.12.15	입주지정일	
4층	401	41.7069	15.5917	33.6841	90.9828	6.1194	454,216,756	256,802,949	25,680,295	736,700,000	73,670,000	92,087,500	92,087,500	92,087,500	92,087,500	294,680,000	거주자 우선분양
	402	54.8349	20.4995	44.2868	119.6213	8.0456	570,499,205	322,546,177	32,254,618	925,300,000	92,530,000	115,662,500	115,662,500	115,662,500	115,662,500	370,120,000	
	403	81.1800	30.3484	65.5642	177.0926	11.9110	870,761,945	492,307,323	49,230,732	1,412,300,000	141,230,000	176,537,500	176,537,500	176,537,500	176,537,500	564,920,000	
	404	90.8426	33.9607	73.3681	198.1713	13.3287	989,325,650	559,340,318	55,934,032	1,604,600,000	160,460,000	200,575,000	200,575,000	200,575,000	200,575,000	641,840,000	
	405	73.4905	27.4737	59.3538	160.3181	10.7828	800,412,912	452,533,716	45,253,372	1,298,200,000	129,820,000	162,275,000	162,275,000	162,275,000	162,275,000	519,280,000	
	406	76.7119	28.6780	61.9556	167.3455	11.2554	843,818,450	477,074,136	47,707,414	1,368,600,000	136,860,000	171,075,000	171,075,000	171,075,000	171,075,000	547,440,000	
	407	50.5400	18.8939	40.8181	110.2520	7.4154	547,686,636	309,648,513	30,964,851	888,300,000	88,830,000	111,037,500	111,037,500	111,037,500	111,037,500	355,320,000	
	408	77.1400	28.8381	62.3013	168.2794	11.3182	789,438,217	446,328,894	44,632,889	1,280,400,000	128,040,000	160,050,000	160,050,000	160,050,000	160,050,000	512,160,000	
	409	50.1600	18.7518	40.5112	109.4231	7.3596	543,555,711	307,312,990	30,731,299	881,600,000	88,160,000	110,200,000	110,200,000	110,200,000	110,200,000	352,640,000	
	410	50.1600	18.7518	40.5112	109.4231	7.3596	546,330,213	308,881,625	30,888,162	886,100,000	88,610,000	110,762,500	110,762,500	110,762,500	110,762,500	354,440,000	
	411	60.0900	22.4641	48.5311	131.0851	8.8166	654,474,124	370,023,524	37,002,352	1,061,500,000	106,150,000	132,687,500	132,687,500	132,687,500	132,687,500	424,600,000	
	412	60.4800	22.6099	48.8460	131.9359	8.8738	658,666,703	372,393,906	37,239,391	1,068,300,000	106,830,000	133,537,500	133,537,500	133,537,500	133,537,500	427,320,000	
	413	63.6262	23.7861	51.3870	138.7993	9.3354	699,914,295	395,714,277	39,571,428	1,135,200,000	113,520,000	141,900,000	141,900,000	141,900,000	141,900,000	454,080,000	
5층	501	41.7069	15.5917	33.6841	90.9828	6.1194	454,216,756	256,802,949	25,680,295	736,700,000	73,670,000	92,087,500	92,087,500	92,087,500	92,087,500	294,680,000	거주자 우선분양
	502	54.8349	20.4995	44.2868	119.6213	8.0456	570,499,205	322,546,177	32,254,618	925,300,000	92,530,000	115,662,500	115,662,500	115,662,500	115,662,500	370,120,000	
	503	81.1800	30.3484	65.5642	177.0926	11.9110	870,761,945	492,307,323	49,230,732	1,412,300,000	141,230,000	176,537,500	176,537,500	176,537,500	176,537,500	564,920,000	
	504	88.8131	33.2019	71.7290	193.7440	13.0309	967,252,948	546,860,956	54,686,096	1,568,800,000	156,880,000	196,100,000	196,100,000	196,100,000	196,100,000	627,520,000	
	505	75.6240	28.2713	61.0769	164.9723	11.0958	823,595,416	465,640,531	46,564,053	1,335,800,000	133,580,000	166,975,000	166,975,000	166,975,000	166,975,000	534,320,000	
	506	76.6079	28.6391	61.8716	167.1186	11.2402	842,646,994	476,411,824	47,641,182	1,366,700,000	136,670,000	170,837,500	170,837,500	170,837,500	170,837,500	546,680,000	
	511	60.4700	22.6061	48.8380	131.9141	8.8723	658,605,048	372,359,047	37,235,905	1,068,200,000	106,820,000	133,525,000	133,525,000	133,525,000	133,525,000	427,280,000	
	512	60.4800	22.6099	48.8460	131.9359	8.8738	658,666,703	372,393,906	37,239,391	1,068,300,000	106,830,000	133,537,500	133,537,500	133,537,500	133,537,500	427,320,000	
	513	63.6262	23.7861	51.3870	138.7993	9.3354	699,914,295	395,714,277	39,571,428	1,135,200,000	113,520,000	141,900,000	141,900,000	141,900,000	141,900,000	454,080,000	

■ 거주자 우선 분양

- 본 업무시설(오피스)의 공급지역(서울시 용산구)은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로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건축물 분양분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3.07.31. 광고일과 다름)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서울특별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분양합니다.
-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업무시설(오피스)의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본 업무시설의 거주자 우선분양은 상기의 공급금액 표에 명시된 호실에 한하여 진행되며, 청약 신청 시 주민등록표초본 등의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 자격 검증을 위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업무시설(오피스) 공통사항

- 계약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법 = 형별 면적(㎡) × 0.3025)
- 건축물의 구조계획에 따라 일부 호실(특히 402호, 403호, 408호, 413호, 502호, 503호, 513호) 내 기둥이 위치할 수 있으며, 층고 및 천장고는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관련 도면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해야 합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 당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동일 전용면적을 가진 단위호실 타입 간에도 주동구성에 따라 호실외벽 두께는 다를 수 있으며, 전체호실 벽체공용면적의 합계를 각 호실별 전용면적비로 균등 배분하였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지분은 대지면적을 해당 용도의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이는 추후 민원제기 및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 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라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에는 주차장 및 공동이용시설(기계실, 전기실, 복도, 계단, 로비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주차장 및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업무시설(오피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관리실 등)은 공용면적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실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되어 있습니다.
- 업무시설(오피스)은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층,향,구조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기 분양금액에는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분양대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실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단, 납부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이후 도래하는 최초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함)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 중 50%는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건축물의 공사 감리자의 공정확인서상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이상 투입이 확인된 시기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별도의 고지 및 안내가 없는 한 상기 예정 일자에 따라 중도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II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최초 분양광고일(2023.08.01.)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1인이 각기 다른 4개 호실 청약이 가능하며, 경쟁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 합니다. 동일인이 5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단,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해당 호실(401호, 501호) 청약 시 1인당 1개 호실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자 우선분양을 신청한 자가 다른 호실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 신청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계약 이후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당사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당첨자선정 방법
일 시	08월 06일(일) (09:00~17:00)	08월 07일(월) 16:00 이후	08월 08일(화) (10:00~14:00)	추첨에 의한 신청 호실별 무작위 결정
방 법	견본주택 방문 청약	견본주택 당첨자 게시	견본주택 방문 계약	
장소 및 당첨자 선정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호반파크 2관, 1층			

- 청약은 견본주택 방문을 하여 청약가능하며, PC, 모바일, 스마트폰앱에서는 청약을 받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계약체결과 관련한 상세 일정은 당첨자 발표 후 개별 연락을 통해 시간대별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니, 당첨자분의 협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서류	청약신청금
본인 신청시	• 청약신청서(견본주택 별도양식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1통(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본인도장 또는 서명 • 주민등록등본	※ 청약신청시 별도의 청약신청금은 없으며, 1인이 각기 다른 4개 호실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 시 1인 1개호실만 신청 가능(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대리신청시(직계가족에 한함) 추가서류	※ 상기 본인 계약시 구비사항 외 추가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법인	• 청약신청서 및 법인 위임장(견본주택 별도양식비치) •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법인을 대표하여 신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재직증명서(대표일 경우 생략) • 사업자등록증 1부	

- 주민등록등본 상의 직계가족이 대리신청시는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며, 대리인은 직계가족에 한합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3.08.0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당사에서 임으로 분양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견본주택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법인 신청의 경우 개인의 청약신청 조건과 동일(법인 당 각기 다른 4개 호실에 청약 가능)하오니 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은 견본주택에서 현장 접수를 통한 청약만 가능하며, 사전홍보관, PC, 모바일, 스마트폰앱에서는 청약을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와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당첨을 모두 무효처리 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신청시 사업주체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한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계약 시 청약 신청자와 계약자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불일치 할 경우 계약이 불가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층 · 호실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이며, 청약신청 시 제출한 연락처로 문자 통보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착오 안내 방지를 위해 전화 안내 혹은 확인 전화는 불가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은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호실의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3년 08월 07일(월) 16:00이후	견본주택 :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호반파크 2관, 1층

- 예비당첨자는 300%를 선정하며,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계약 이후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당사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 안내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에서 수의 분양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 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및 계약은 취소하고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분양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인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미계약 호실에 대해 호실 및 면적, 분양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분양모집은 건축허가 사항 및 계약 장소에 비치한 설계도서에 준하여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후 부득이 계약자 귀책사유로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III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공급금액 납부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2023년 08월 08일(화) 10:00 ~ 14:00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호반파크 2관, 1층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계약금 납부 : 아래의 공급금액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호실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여야 유효하며, 아래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별도의 통보 없이 예비당첨자 소진 후 사업주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계약체결과 관련한 상세 일정은 당첨자 발표 후 개별 연락을 통해 시간대별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니, 당첨자분의 협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은행명	납부계좌	예금주	비고
계약금 납부 계좌	우리은행	1005–604–006693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405호 당첨자 "홍길동" → "405홍길동")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납부 : 동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 당사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 수납불가)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이후 도래하는 최초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시	• 계약금 입금확인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계약자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 시 생략) 및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업무시설_오피스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용도 : 업무시설_오피스 계약용)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1통) • 계약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통(거주자 우선 분양 당첨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으로 분양신고일(2023.07.31.) 현재 서울시 거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법인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업무시설_오피스 계약용)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및 사업자 등록증 • 법인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 외국법인일 경우 : 관련법률상 토지취득허가서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1통(용도:업무시설_오피스 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당사 견본주택 내 비치) 1통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및 도장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 증명 서류는 최초 분양 광고일(2023.08.0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는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본인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에서 수의 분양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및 계약은 취소하고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사업주체로 귀속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분양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및 사전홍보관 내에 비치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분명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귀속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에도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공급계약서 참조)
- 주변 및 인접부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소음, 진동 등),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단지 내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 · 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계약시 필요한 전자수입인지 비용은 계약자 부담이며 인지세 미납부 시 권리의무 승계 및 소유권이전에 불이익이 있으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호실에 대해 호실 및 면적, 분양금액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 본 업무시설(오피스)을 계약할 경우 「외국환 거래규정」 제9–42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거 계약자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관리비 및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관리주체 등에 의해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르며,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중도금 대출안내

-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에 관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와 금융기관 간의 중도금 대출을 알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아래 사항들은 중도금 대출의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안내사항이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 대출금액 · 대출조건 및 대출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보장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 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어떠한 보장 또는 보증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대출 여부는 계약자의 대출 적격사유 등을 고려하여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자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등의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알선이 제공되지 않거나, 알선이 제공될 경우라도 계약자의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부적격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본 오피스(업무시설) 공급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 기관 : 추후 별도 공지 예정(단, 중도금대출 알선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금액 : 업무시설(오피스)의 경우 분양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최대 50% 무이자 적용(단, 정부 정책 및 금융권 그리고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출조건은 변경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는 사업주체에서 부담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 부담입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중도금 대출 혹은 본인 자금 조달시에는 별도의 이자지원 및 할인은 적용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 신청 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및 일반임대사업자등록증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50% 내에서 알선하며, 시행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아니하거나 대출 불가로 인한 자납 또는 입주지정기간 전에 받은 중도금을 상환하는 등의 이유로 대출이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분양자는 그 금액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한 후 대출이 불가할 경우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협약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10%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은 1인 최대 건수 및 대출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 및 법인은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납하여야 합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2025년 03월 예정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셔야 입주가 가능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업무시설(오피스)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행정명령, 관련법령의 제정/개정, 주요질병(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가 재난사태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 보상금액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의2호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입주개시일 1개월 전) 입주자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통지는 예정일 10일 전까지 우편으로 하고, 입주자 사전점검 미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사전점검은 없습니다.)
- 업무시설(오피스)의 입주시기와 판매시설의 입점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위 표시 재산의 하자보수책임,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관련법에 따릅니다.

IV 기타 유의사항

※ 본 분양 광고의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본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분양사업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개시 예정일 : 2025년 3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통 유의사항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은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업무시설(오피스)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 보상금액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업무시설(오피스)은 사용승인 후 불법구조 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행정 조치,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설(오피스) 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타입별 면적(㎡) × 0.3025 또는 타입별 면적(㎡) ÷ 3.3058]
- 각 업무시설(오피스) 전용면적은 건축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벽, 기둥 등이 차지하는 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한 것으로써,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각 호실의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은 기둥의 크기, 벽체 · 단열재 기타 마감재 등의 시공여부 및 두께 등에 따라 계약면적보다 다소 줄어들 수 있으며, 청약희망자 또는 계약자는 이 점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의 홍보물은 건축허가(변경)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에 의하여 대지경계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호실당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단, 소수점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 공용홀, 지하주차장, 타시설의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조경공간(식재, 시설물, 기부채납부지 등),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방음벽 유무 및 형상과 높이, 인접단지와의 경계부 마감계획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호실의 공용면적, 연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각 용도별 면적이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본 업무시설(오피스)의 공급가격은 각 호실의 구조, 위치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호실별 공급금액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에 따라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일부 호실은 공사 시행 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선행세대 호실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전 보수 또는 재시공해 인도하기로 합니다.
- 본 업무시설(오피스)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업무시설(오피스)은 배치상 향별, 층별 차이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업무시설(오피스)의 특성상 층간, 호실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부대복리시설, 주차램프, 외부계단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의 일부 제한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 단지 내(부대복리시설, 지상돌출물, 쓰레기 관련시설, 공공보도 등) 및 주변 현황(인접 APT단지, 인접 주택단지(상가주택 포함), 주변상가, 공공청사(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종교시설(교회 등), 학교, 공원, 지하철역, 단지외부도로 등)에 의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변시설(도시계획 시설 포함)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2항에 따라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때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업무시설(오피스)의 현장여건 및 구조/기능/성능/상품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의 결의에 따라 인허가를 진행 및 변경될 수 있고, 경미한 사항이 아닌 사업시행계획 변경시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변경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계약 이후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발생시 사업주체의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이 아닌 사업시행계획 변경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변경됩니다.
- 사전홍보관 및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의 마감재료 및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 ·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업무시설(오피스) 모형 또는 분양제작물은 미건립 되며, 도면, CG 등을 통하여 계약전에 평면형태, 실면적 등의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분양사업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시 단지모형 및 분양 유인물등에 표현된 단지의 명칭, 호수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입면디자인,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문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 · 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 광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의 홍보물에 포함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의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홈페이지,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의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습니다.
- 본 분양목적물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관 등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의 건축물 배치구조 및 호실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 지분 및 평형별 공급면적 등이 입주 시 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대지측량 결과에 따른 대지 경계선 조정, 관련법규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등에 따라 단지 조경 선형 및 세부 식재 계획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인접한 실은 기계장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일부 호실의 전용부분에 공용의 설비배관 및 덕트가 위치하여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 및 공용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두께 등은 풍동 실험 결과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로고의 위치 및 디자인, 단지 내 조경, 현관, 지하출입구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나 지하층으로의 이삿짐 차량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오수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건축, 기계, 전기 등)은 옥상 녹화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물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은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일부 호실은 엘리베이터 동작에 따른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이용 계획은 입주 후 관리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승강기 홀과 복도는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및 명칭 등은 향후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업무시설(오피스) 계약면적 외 주거부분 및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업무시설(오피스)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 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지상/지하철,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 함.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 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 함.
  –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 함.
  –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함.
  – 외국인 투자신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함.
- 계약 후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예정이며, 계약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중도금 납부분부터 계약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단, 계약자는 사업자등록 시 사업주체에게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사실에 대한 미통보 및 통보지연, 사업자 미등록, 부가세 미신고 및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환급에 대하여 계약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 업무시설(오피스)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의 내력벽체를 임의대로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법사항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 건축물을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업무시설(오피스)과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주소변경[전자주소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전 ·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실내 · 외 공용부분 시설물 및 마감재의 변경, 공동시설의 추가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 · 후 최종 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벤처기업 육성에 따른 벤처기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 법인세 · 취득세 ·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감면사항은 입주자께서 직접 확인하시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경등의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명시된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자의 범위는 법률 및 고시의 변경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분양계약서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 유의사항

- 당 사업지 북서측 한강대로(40m도로), 남서측 서빙고로(30m도로), 북동측 및 남동측에 연결녹지가 설치되어 차량 통행 및 보행자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학교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등 일부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행자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입주 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도로 및 향후 계획된 도로의 설치로 인해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해당 업무시설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타 시설의 이용자와 주차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여야 하고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타 시설 간에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실의 지도 ·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단지외부의 근린공원 및 공공시설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업주체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조성 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시행계획도서, 카달로그, 단지모형 상의 외부도로, 진입도로는 사업시행계획승인시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에 따라 반영되었고, 추후 교통영향평가 변경이 있을 경우 단지 내,외부도로, 진입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출입구 위치 및 형태는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계획승인 상의 시설물 또는 조경수목이 업무 또는 영업 등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하여 이전 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와 대지와의 레벨 관계에 의하여 일부 출입구 부분에 계단 및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니 계약시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또는 개발로 인한 건축사항, 지구 내 시설물의 변경과 업무 및 분양시설의 배치, 구조 및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주변조건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각 용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조경 및 공용시설에 장비반입구, 한전소유의 전기설비 설치공간(한전패드), 도시가스 관련 시설, 맨홀, 우수조, 실외기, 급배기구 및 재활용폐기물보관소, 재활용 창고(분리수거 공간)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냄새, 진동, 소음, 해충, 사생활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의 외부/내부 마감, 재질 및 색채 계획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 일부 특화를 위하여 주변에 설치된 조명시설은 계약자 임의로 옮길 수 없으며, 조명에 의해 일부 내부에 빛이 들어갈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며, 조명의 위치나 빛의 세기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의 일부 특화를 위하여 내외부 및 주변에 설치된 조명시설에 대한 전기세 및 관리비용은 입주민의 관리비에 포함하여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업지 위치는 도로소음에 직접 노출된 지역으로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도로 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입주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하여 일체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 부지 외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은 개발주체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사의 시공 범위가 아님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 통로는 입주민 외 일반인 통행을 제한하거나 폐쇄할 수 없으며, 관리유지비 발생 시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북서측 한강대로변에 공개공지가 2개소 설치 예정이며, 동측으로 연결녹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건축물의 구조계획에 따라 일부 호실(특히 402호, 403호, 408호, 413호, 502호, 503호, 513호) 내 기둥이 위치할 수 있으며, 층고 및 천장고는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관련 도면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해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법적 기준 내)이로 인해 분양사업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배치계획에 따라 일부호실의 출입문의 방향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에 안내된 것과 반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별 출입문 및 방화문, 점검도어, 핸드레일, 유리 등은 본 공사시 제조사, 유리, 하드웨어, 프레임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생활환경 여건에 따라 창호에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사전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도서에 준하여 설치됩니다.
- 입주 시 불법구조 변경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실 출입구의 사이즈,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은 복합건축물로서 아파트, 오피스텔,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이 있으며, 건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보행동선 및 입면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 변경 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용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량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실의 전기는 기본 용량만 공급하며, 입주 후 전기용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변경공사를 진행하고 관할 지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일부 호실의 경우 벽체 위치 및 문(출입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설치되는 재활용 폐기물 보관소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 내 · 외부 창호 디자인, 프레임 개수 및 사이즈, 유리색상, 두께 및 제품사양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실별, 층별, 위치별로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는 향후 풍압, 풍동 등의 구조시험, 추후 본공사 협력 시공업체 선정결과 및 입주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재질, 사양 및 디자인을 포함한 제반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관리 및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출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호실 천장내부에 공용배관 및 덕트, 상부실 배관 등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이 설치되어 소음발생 및 유지보수용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철거 및 이동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에 의해 벽체 철거/변경시 벽체에 설치된 기구, 배관, 배선 등은 입주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공사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일부가 돌출 및 셋백으로 인하여 일조 및 통풍의 불리, 우천시 소음, 조망권 제한, 채광간섭, 빛의 산란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소화전 등의 위치 및 오수배관의 위치는 시공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지 내/외부 공개공지, 드라이에어리어(DA), 차량진출입구, 자전거 거치대 등에 의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단지 내 옥외소화전 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설치 위치는 관할 소방서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명칭, 호표시, 외부 색채 및 경관조명 계획은 향후 관계 기관의 심의/자문 결과 및 현장여건 따라 입주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및 공법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계법규(건축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건축주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차차단기(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계단은 업무시설과 타 시설이 연결되어 있으며(지하주차장 포함), 유사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의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의 층고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업무시설과 타 시설의 주차는 통합으로 관리 운영되므로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가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리주체의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CCTV 등의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랍니다.
- 단지 내 CCTV설비는 방범기능 외 입주자 편의를 위한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랍니다.
- 본 건물은 복합건물로서 원활한 교통통제 및 운영을 위하여 혼용하여 이용될 수 있으며, 용도별 주차구획도 혼용하여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부 주차장 사용구획 및 주차대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향후 경관조명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일부 실은 경관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추후 판매시설 등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주로 인하여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공개공지 및 전면공지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서 입주자 임의로 펜스 설치 및 변경, 제거할 수 없습니다.
- 공개공지, 조경, 조경시설물 및 사업지내 보행공간의 유지 및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미술장식품의 형태, 크기, 위치는 향후 미술장식품 관련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 호실은 접근성, 조망, 소음 등의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물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 납부의 주체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 · 하 · 오수 · 지역난방 · 도시가스 · 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항공법 및 항공법 시행규칙에 의거 건물 옥상층과 건물 외벽에는 항공장애등이 설치될 경우 주간이나 야간에 눈부심이나 조망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항공청과 협의과정에서 위치나 수량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의거 옥상층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옥외안테나 및 중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시공과정에서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붕층 및 옥탑층에 위성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태양광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바람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단지 외부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시설물 및 조경수 식재 위치, 마감재료, 형태, 색채는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건물 남측에 지하주차장 진입을 위한 램프가 계획되어 있는 바, 인접한 세대에서는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 차량 불빛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위치는 견본주택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부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실내조경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 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호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실에는 화재시 필요한 소방설비로 인해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호실은 타 시설로 인한 소음 발생, 상가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일조권, 조망권,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호수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상가 영업제한, 용도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면 유리커튼월구조의 건물로 이삿짐의 이동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공동 환기설비로 인하여 사용상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진동,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설비 및 환기용 구조물과 천창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수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인근에 맨홀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수도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전체 지붕 우수 처리를 위해 공용복도 및 전용공간의 천장 내부로 우수관이 관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의 소방관련 시스템 및 설비는 본 시공 시 소방법 기준에 따라 허가도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내부는 기계설비 및 관련 덕트, 배관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고, 그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복도 및 전용면적내 일부구간 천장고가 낮아지는 등 시공 상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동 직하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내력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의 일부창은 소방기준에 따라 배연창이 적용될 예정이며, 배연창이 설치된 창은 수동 개폐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 유효 높이는 차로는 2.3m, 주차 공간은 2.1m 기준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상은 비상차량(소방차, 구급차 등)외 진입 및 주 · 정차가 불가합니다.
- 각 호실의 일부창이 소방관 진입창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유리창에 삼각형의 붉은색 표식이 부착됨으로 시야를 가릴 수 있고 해당 법령의 설치기준에 따라 시공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호실의 일부구간에 완강기가 설치될 예정이오니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본 건물의 외관은 커튼월 형태로 되어 있으며 그로인해 벽식구조 건물과 다르게 난방비 및 냉방비등의 관리비용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외관은 커튼월 형태로 되어 있으며 커튼월 자재 특성상 외부의 기후적, 환경적 요인등으로 인해 약간의 움직임이 발생하며 그로인해 작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외관은 커튼월 형태로 되어 있으며 내부 벽체는 코어부위를 제외한 건식벽체로 되어 있음. 그로인해 각 실간 기준치 이내의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외관은 커튼월 형태로 되어 있어 일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어 필요시 물기를 닦을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준공시 소방 및 장애인 기준(BF인증포함)에 관련된 사항은 허가 완료시 보다 법적 의무 적용사항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에 맞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에 의해 벽체 철거/변경 시 벽체에 설치된 기구, 배관, 배선 등은 입주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공사해야 합니다.
- 전기, 통신, 맨홀, 소화전 등의 위치 및 오수배관의 위치는 시공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업무시설(오피스) 미관을 위해 타 업무시설(오피스)의 전기, 통신 설비, 배관(급수, 가스, 냉매, 소방 등), 배선, 케이블 트레이 등 각실 천장으로 관통될 수 있습니다.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전 소유의 전기설비(한전패드), 전기인입 맨홀 및 통신인입 맨홀이 지상 1층에 설치될 수 있으며,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커튼월과 건식벽체 만나는 부위는 필요에 따라 마감상 일부 비전구간이 마감판으로 가려질수 있습니다.
- 소방관 진입창과 완강기 설치부위는 24T복층 유리로 시공되며 단열부족 및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8층 호실 중 완강기 설치(바닥 설치형) 세대가 관련 법규에 의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천장 커튼박스내 경관 조명용 조명기구가 설치될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자격 및 대상 업종

-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연면적의 100분의 70이상을 벤처기업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의거한 기업이 사용하며, 나머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지원시설(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2023–15호]에 의거한 지원시설) 및 공용회의실, 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휴게실,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로 사용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직접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벤처기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따른 기업

1.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벤처기업
2. 창업보육센터에 3년 이상 입주한 경력이 있는 중소기업
3.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음)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6항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사업 중소기업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 ·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11.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2. 방송업
13. 전기통신업
14.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22.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 · 공급하는 사업
23. 엔지니어링사업
24. 물류산업
25.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자동차정비공장
27.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2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 · 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2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0.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31.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3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3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3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36.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9.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1. 연구개발 기획, 연구개발의 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 · 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42.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 ·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4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46. 임업
47.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48.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2항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 · 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다. 「대학설립 · 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11. 경영컨설팅업(재정 · 인력 · 생산 · 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20. 무형재산권 임대업
21. 광고 대행업
22. 옥외 및 전시 광고업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이 항 제7호, 제10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이 경우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산업을 게시하여야 한다.
2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0. 자료처리,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
3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32. 전기 통신업

4)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2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2023–15호]에 의거한 지원시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 대리점 또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11.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1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1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1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18.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나.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다. 「변리사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마.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20. 그 밖에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20–1.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을 인가받은 벤처기업지원관련 단체
20–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또는 동법 제29조에 의한 그 하부조직
2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
20–6.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0조의2에 의한 콘텐츠공제조합
20–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 · 운영하는자 또는 그 하부조직
20–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창업촉진사업을 수행하는 자

5)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제6호에 의거한 추가지정 중소기업

1. 인공지능 · 빅데이터(예 : 컴퓨터비전,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고객데이터플랫폼, AIoT)
2. 미래 모빌리티(예 : 전기 · 수소차, 자율주행시스템, UAM)
3. 바이오 · 헬스(예 : 의약, 임상기술, 의료기기, 감염병 백신 · 치료)
4. 차세대 원전(예 : 소형모듈원자로(SMR), 선진원자력시스템 · 폐기물관리)
5. 차세대 물류(예 : 로봇 · 드론 배송)
6. 차세대 통신(예 : 5G고도화, 6G, 오픈랜)
7. 로봇(예 : 지능형 · 서비스 로봇, 스마트 시스템)
8. 친환경 에너지(예 : 자원순환, CCUS, 친환경 신소재, 신재생, 이차전지, 에너지 절감)
9. 우주항공 · 해양(예 : 위성, 발사체, 기지국, 비행체, 첨단선박, 해양자원탐사)
10. 양자 기술(예 : 양자컴퓨팅, 양자센서, 양자통신)
11. 사이버 보안 · 네트워크(예 : 복호화, 블록체인, 클라우드, 메타버스, 모바일 엣지컴퓨팅, 사물인터넷) (다만, 블록체인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 중소기업으로 제한한다.)
12. 시스템 반도체(예 : 로직 · 아날로그 IC, 마이크로컴포넌트)
13. 차세대 디스플레이(예 : 프리폼 디스플레이,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1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어 인정한 신기술

■ 분양사업자 (사업주체 및 시공자 등)

구분	시행자	시공자	분양대행사
상호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조합	㈜호반건설	(주)씨앤디플래닝
법인등록번호	274371–0010509	204711–0007384	110111–6266111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구분	감리회사	감리 금액	비고
건축감리	한미글로벌(주)	3,153,850,101	
전기감리	한미글로벌(주)	742,284,095	
소방/통신 감리	한미글로벌(주)	943,865,804	

※ 상기 감리금액에는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 전체 건물에 대한 감리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는 분양사업자인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조합이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 후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분양 사업자를 대신하여 이 분양계약의 이행 또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의 반환을 보증합니다.**

※ 기타 보증관련 세부내용은 분양계약서 및 회사의 분양보증보험 보통약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보증보험(주) 분양보증보험 관련 주요내용

증권번호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제 100–000–2023 0307 8556호	일금 일백오십억구천팔백육십사만 원정 (₩ 15,098,640,000)	2023년 07월 22일부터 ~ 2025년 02월 28일까지

1. 다만, 주계약(분양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위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당해 계약의 실제 사용승인일(분양보증 건축물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승인을 포함)까지 보험책임을 집니다.
2. 증권발급 지점 및 연락처 : 혁신영업센터지점, 02–3671–8000

■ 보상하는 손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분양사업자(이하 "보험계약자"라 합니다)가 동 분양 공고 및 분양계약 후 보통약관 제4조(보험사고의 발생)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분양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에게 보험증권 및 보통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이 반환을 보증합니다.

■ 보험사고의 발생

보험사고라 함은 다음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회사는 보증채무의 이행 방법을 보통약관에 따라 결정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 대위변제 · 대지급 · 부도(이상 관련인 정보포함) 등록사유가 발생된 때
   나. 파산 ·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그 보전처분, 개시결정, 파산선고가 있는 때
   다.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 등이 신청되거나 개시된 때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보험계약자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보다 25퍼센트 포인트 이상 미달하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18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피보험자에 정당한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양수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의 책임 있는 사유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대물변제, 차명계약, 이중계약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2.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분양광고(이하 "분양공고"라 합니다)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분양대금
3. 분양공고에서 지정한 분양대금 납부계좌(분양공고에서 지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회사가 분양대금 납부 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
4. 피보험자가 회사로부터 분양대금의 납부중지 통지를 통보받고서도 그 납부중지를 통보받은 계좌에 납부한 분양대금
5. 피보험자가 분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분양대금 중 납부 기일이 보험사고일 이후에 해당하는 분양대금. 다만 회사가 분양대금을 관리(보험계약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분양대금은 제외합니다.
6. 보험계약자가 분양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위약벌, 기타 손해배상 채무 또는 부당이득 반환채무 및 피보험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7. 피보험자가 대출받은 분양대금 대출금의 이자
8. 피보험자가 분양대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9. 피보험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분양대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10.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양대금
11. 보험계약자가 분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기일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
12. 분양공고에서 정한 건축물(주택 및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 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보증채무이행 청구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서 이를 회사에 알리고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며, 보증채무이행 청구권은 보험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분양대금의 납부

분양대금은 분양공고에서 지정한 분양대금 납부계좌(분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말합니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보험사고 발생 등의 사유로 분양대금 납부중지 또는 변경을 통보할 수 있으며, 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회사가 분양이행시 잔여 분양대금 납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통하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협조의무

회사는 보증채무이행과 관련하여 다수의 피보험자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피보험자 중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는 등 보증채무 이행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보통약관에서 정한 통지 및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로 인해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로 보증채무 이행방법의 선택을 최고합니다. 피보험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회사에 변경된 주소를 알려야 하며, 회신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그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보증채무 이행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회사에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주소 변경 통지 해태로 인해 회사로부터 최고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

■ 보증사실 확인 및 기타 유의사항

※ 동 분양계약에 대한 보증사실 여부는 회사 홈페이지(www.sgic.co.kr)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분양보증보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통약관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회사의 증권발급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 견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호반파크 2관, 1층
- 분양상담전화 : 1670–6207
- 견본주택 운영시간 : 10:00 ~ 17:00

■ 분양홈페이지 : https://www.hobansummit-ys.co.kr/

※ 본 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 업무시설(오피스)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광고와 분양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 적용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IC
견본주택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양재대로
선암IC

견본주택 |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호반 파크 2관 1층

1670.6207

오피스 51실 중 **일반분양 22실**

HOBAN

시행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조합** 시공 **호반건설**